

현행	개정안
<p>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32조(타직원에의한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신설)</p> <p><별표 1></p> <p><u>물품의 품종·상태구분</u></p> <p>○ 물품의 분류(생략)</p> <p>○ 품종 구분 기준</p> <p>(1) 비품</p> <p>① (생략)</p> <p>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p> <p>③ (생략)</p> <p>○ 물품상태 분류기준(생략)</p>	<p>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p> <p>.....</p> <p>.....</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제32조(타직원에 의한 인계)</p> <p>.....</p> <p>.....</p> <p>.....제30조</p> <p>.....</p> <p>제3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 1></p> <p><u>물품의 품종·상태구분</u></p> <p>○ 물품의 분류(현행과 같음)</p> <p>○ 품종 구분 기준</p> <p>(1) 비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0만원.....</p> <p>③ (현행과 같음)</p> <p>○ 물품상태 분류기준(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4. 12. 22. 총무재무위원회</p> <p>1. 심사결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4일</p> <p>다. 상정일자 : 제26회의회(정기회) 제8차위</p>	<p>원회('94. 12. 22.)상정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p> <p>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문 영 승</p> <p>가. 제출이유</p> <p>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현행의 각개별</p>
--	---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게 대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진재)

○ 동조례안 제4조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제170회 정기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중 관련 규정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내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과세”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전액면제”로 '94. 12. 2일 수정의결된 바있어 동조례안 제4조의 규정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적으로 현재 마포구에는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종교재단 병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유남렬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 답변(세무1과장 문엽승) : 검토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 질의(황태식 위원) : 우리구에는 해당되는 부동산이 정말 없는가?
- 답변(세무1과장 문엽승) : 없다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유남렬 위원

나. 수정이유 : 안 제4조는 지방세법개정안의 관련규정이 수정의결 됨으로 수정코자 함.

다. 수정주요골자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4. 12. 22.

발 의 자 :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제4조의 조문이 국회 제170회 정기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중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내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과세에서 전액면제로 수정의결 되어 우리조례의 불합치되는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내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과세에서 전액면제로 수정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중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원안 · 수정안대비표

현행	수정안
<p>제 3 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생략” 제 3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 3 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원안과 같음” 제 3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 4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 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u>인구 100 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 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 4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 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u>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p>
<p>제 4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제 4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제 5 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p>	<p>제 5 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

의안 번호	361
----------	-----

제출일자 : 1994. 11. 24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제정이유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현행의 각개별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 및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사회복지시설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장)

3. 조례(안) : 별첨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 제7조, 제8조, 제9조
- '95년 시행 지방세감면 조례준칙(1994. 11. 11. 내무부세제 13400-376)
- '95년 시행 지방세감면 조례준칙(1994. 11. 14. 서울시 세정 13400-1151)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제 2 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 3 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단체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 3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4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이 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4 장 사회교육 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5 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 6 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7 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축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축물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 5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 8 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점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직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년도 4월 30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가 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 9 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

업소세(재산할)와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한다.

제11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6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

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5조(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6조(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

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17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4.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 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 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

- 세면제조계
10.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 제에관한조례
 1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 세면제에관한조례

<별표 1>

상 이 등 급 분 류 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합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관련

